

거치식 예금 약관

제1조 약관의 적용범위

이 약관은 거래처와 홍콩상하이은행(이하 “은행”)과의 거치식 예금 거래(이하 `이 예금'이라 한다)에 적용되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의 내용을 적용한다.

제2조 지급시기

이 예금은 약정한 만기일 이후 또는 거치기간종료 후 거래처가 청구할 때 지급한다. 다만, 거래처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구할 때는 만기일 또는 거치기간종료일 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다.

제3조 이자

① 이 예금이자는 약정한 기간에 따라 예금일 당시 거래처와 은행이 합의한 이율로 셈하여 만기일 또는 거치기간종료일 이후 원금과 함께 지급한다. 그러나, 거래처의 요청이 있으면 예금 가입일 기준으로 월별 또는 분기별로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.

② 만기일 또는 거치기간종료일 후 지급 청구할 때는, 만기일 또는 거치기간종료일 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만기일 또는 거치기간종료일의 해당 통화의 보통예금이율을 적용하여 지급한다. 만기일 또는 거치기간종료일 후 보통예금이율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, 신규가입당시 우대금리를 적용하였을 경우에도 만기일 또는 거치기간종료일 후 이율 적용 시에는 보통예금이율을 적용한다.

③ 만기일 또는 거치기간종료일 전에 지급 청구할 때는 가입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가입일 당시 거래처와 은행이 합의한 중도해지 이율로 셈하여 지급하며, 이미 지급한 이자는 지급할 금액에서 뺍니다.

④ 이 예금 중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예금은 이율을 바꾼 때 바꾼 날부터 바꾼 이율로 셈하여 이자를 지급합니다.

제4조 장기예금으로 기한변경과 이자

① 이 예금을 만기일 또는 거치기간종료일 전에, 처음 약정한 기한보다 긴 기한의 예금으로 변경할

때는 제3조 제③항에 상관없이 가입일부터 변경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제3조 제①항의 이율로 셈한 이자를 지급하고, 변경일 이후 이율은 변경일 당시에 예금주와 은행이 합의한 이율로 셈한 이자를 지급합니다. 다만, 이미 지급한 이자는 지급할 금액에서 뺍니다.

② 기한 변경한 예금을 변경된 만기일 또는 거치기간종료일 전에 청구했을 때 그 이자는 변경 전 예금 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제3조 제③항에 따라 처리합니다.

제5조 무기명식 예금의 증서발급과 권리행사

무기명식 예금은 무기명으로 예금 증서를 발급하며, 거래처는 모든 권리 행사를 이 증서로 한다.

제6조 무기명식 예금 증서의 면책

은행이 예금 증서 소지인에게 지급(이자 포함)한 경우는, 그 소지인이 무권리자이어서, 증서를 분실·도난 당한 거래처 등에게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다만, 소지인이 무권리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.

제7조 세금우대통장 거래

① 이 예금 중에서 거래처가 개인인 정기예금은 세금우대통장으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.

② 세금우대통장으로 거래할 수 있는 예금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세금을 우대 받을 수 있습니다.

1.예치기간: 1년 이상

2.예치한도: 세금우대 종합통장으로 거래할 수 있는 모든 거치식·적립식 예금과 신을 포함하여 원금 4,000만원 이내 (전 금융기관 한도 포함)

③ 거래처가 중복하여 세금우대통장을 개설한 것으로 판명된 때는, 최초 세금우대통장이외의 통장을 일반예금으로 바꾸고 이를 거래처에 알립니다.